

|                                                                                   |          |  |      |               |          |     |
|-----------------------------------------------------------------------------------|----------|--|------|---------------|----------|-----|
|  | 교직원 복지규정 |  | 문서번호 | 3-2-30        |          |     |
|                                                                                   |          |  | 제정일  | 2013. 03. 01. |          |     |
|                                                                                   |          |  | 개정일  | 2014. 02. 03. |          |     |
|                                                                                   |          |  | 페이지  | 1/2           | 관리<br>부서 | 사무처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대학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의 교직원(계약직원 제외)에게 적용한다. 이규정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복지의 종류) 복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 자녀 교육비 보조
2. 교직원 콘도 이용(실비) 제공
3. 장기근속자 포상
4. 정년퇴직자 포상
5. 교직원 상해보험 가입
6. 전별금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제4조(지급기준 및 시기 등) ① 교직원 자녀 교육비 보조금은 국·공립 중·고등학교 수업료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② 본 대학 소유의 콘도(설악 소재) 이용 요청 시 실비 이용권을 제공한다.

③ 전별금은 본 대학교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교무회의를 거쳐 퇴직당시 월보수액을 3개월 범위 이내 (퇴직당시 월보수액 × 3개월범위이내)에서 총장의 승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월보수액에서 설날 및 추석 상여금, 불특정 지급액은 제외한다.

④ 기타 사항은 교직원 포상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예산) 매 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               |          |     |
|-----------------------------------------------------------------------------------|----------|------|---------------|----------|-----|
|  | 교직원 복지규정 | 문서번호 | 3-2-30        |          |     |
|                                                                                   |          | 제정일  | 2013. 03. 01. |          |     |
|                                                                                   |          | 개정일  | 2014. 02. 03. |          |     |
|                                                                                   |          | 페이지  | 2/2           | 관리<br>부서 | 사무처 |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